

■ 논 단

국제상사중재의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과 법률적 문제*

김 병 태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미국변호사, 법학박사(SJD)

요 약 문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요 국제중재기관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중재규칙에 명시적인 신속절차 규정을 두고 신속중재를 도모하고 있다. 비록 중재규칙에 신속절차 규정을 두더라도 신속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의 신속한 절차를 위한 모든 중재 참가자의 의지와 상호 긴밀한 협력이다. 일반적으로 신속절차의 선택적용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당사자 자치가 보호될 수 있는 반면에, 신속절차의 자동적용은 상황에 따라 당사자 자치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과 관련된 법률적 다툼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특히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당사자 합의와 신속절차의 규정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또는 신속절차상의 기간 단축과 같은 부가요건으로 인하여 당사자 합의 또는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 등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 이에 관한 문제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속절차 규정은 중재절차의 단순성과 신속성을 위해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가 3인의 중재인과 같이 신속절차 규정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단독 중재인을 요구하는 신속절차와 충돌되는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된 국제중재에서는 결과적으로 신속절차 규정을 우선 고려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당사자 합의를 우선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재판관할권에 따라 동일 문제에 대하여 다른 입장과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의 효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어느 사건에서나 모두 당사자 자치의 우선적 보호를 고려한다는 점은 공통되므로 당사자의 구체적인 합의는 일반적인 중재규칙에 우선한다는 일반원칙은 국제중재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신속한 중재절차를 위해서는 단독 중재인의 선임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신속한 중재를 위한 절차상의 부가요건 예컨대, 서면심리와 허용 가능한 서면제출의 수 및 각 제출에 부여된 시간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부과된다. 서면제출과 시간제한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신속절차의 제한은 중재의 신속성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수단이 될 수 있지

* 이 논문은 2020년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때문에 오히려 당사자간의 평등과 적법한 절차가 침해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신속절차 규정에 따른 중재판정이 취소되거나 그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속절차에서도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방어 또는 변론의 기회가 적절하고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주의와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신속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속한 중재를 위하여 신속절차상 중재판정의 기한을 설정하고 판정이유 기재의 특례와 같은 또 다른 절차상 부가요건을 부과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하여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중재판정의 이유기재에 대한 예외적 조치는 재판관할권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에서 당사자와 중재인은 중재판정의 이유에 관한 법적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국가의 법원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당사자는 합리적인 판정이유가 포함된 중재판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국제상사중재, 신속중재, 신속절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단독중재인, 서면중재, 중재판정, 중재판정부

〈目 次〉

I. 서론

II. 신속한 중재판정을 위한 신속절차

1.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
2. 신속절차에 관한 국제중재규칙

III. 신속절차의 중재판정과 주요 법적 문제

1. 신속절차의 자동적용에 관한 문제
2. 신속절차의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문제
3. 신속절차의 절차적 부가요건에 관한 문제

IV. 결론

I. 서론

국제상거래에서 중재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중재절차의 형식주의와 지연으로 인하여 중재의 신속성이 종종 기대에 못 미치자 새로운 개념의 ‘신속중재’(expedited arbitration)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신속중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중재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신속절차’(expedited procedure)에 관한 중재규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¹⁾ 이러한 점에서 신속중

재는 효율적인 신속절차를 통하여 중재판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²⁾

비록 신속중재가 일반적으로 신속절차에 의하여 달성되더라도, 중재규칙에 신속절차의 규정이 없다고 신속중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재의 신속성에 관한 인식과 협력이 당사자와 중재인 사이에 존재한다면 신속절차 규정에 상관없이 신속중재는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속절차에 의한 신속중재의 수요가 국내외적으로 증가하자 신속절차를 명확히 보장하려는 국제중재기관의 노력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는 이미 지난 2017년 3월 1일부터 신속절차 규정을 도입하였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하 'UNCITRAL')도 신속절차를 포함하기 위한 중재규칙의 개정작업을 현재 마무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대부분의 국제중재기관 역시 신속절차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이제 계약당사자와 중재기관으로부터 신속중재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기존의 소송에서 중재로 그리고 다시 중재에서 신속중재로 관심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³⁾

이와 같은 신속중재에 관한 관심은 그동안 중재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신속절차 규정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었다면, 초기의 이러한 관심은 이제 신속절차의 유효한 중재판정을 어떻게 확보하여 실질적인 신속중재를 구현해 나갈 것인가로 이어지고 있다. 비록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신속절차 규정을 두더라도 규정의 흠결 또는 신속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의 효력이 법적으로 문제된다면 궁극적으로 신속중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신속중재에서는 중재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절차적 수단도 중요하지만, 신속절차에 따른 유효한 중재판정의 확보와 중재판정 집행의 보장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상거래를 고려한다면 국제중재에 의한 중재판정에서는 주요 외국의 중재규칙까지 포함하여 함께 중재판정의 유효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제중재규칙에서 정하는 신속절차는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면 제출과 심리 제한을 포함하는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고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판정에 대한 일정한 예외를 허용하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일반적인 중재절차와 비교하여 신속절차는 당사자의 심문이 생략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요구하고 또

1) expedited arbitration 및 expedited procedure는 '신속한 중재'와 '신속한 절차'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중재규칙은 '신속절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신속중재'와 '신속절차'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2) 김병태, "신속한 중재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시사점 - UNCITRAL의 신속중재규정(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2020.8), 277면.

3) UNCITRAL Working Group II,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Issues relating to Expedited Arbitration," A/CN.9/WG.II/WP.207, February 4-8, 2019, para. 8.

한 이러한 절차에는 시간적 제한을 두기도 하며 서면의 양과 길이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어 신속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속절차의 제한 또는 특례는 중재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때로는 중재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배제하게 되어 당사자 자치의 원칙과 충돌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특히 중재인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신속절차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중재절차의 적법성 및 중재판정의 집행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당사자는 중재계약에서 3인의 중재인을 합의하였으나 신속절차 규정에 따라 단독 중재인이 선임된다면 이에 따른 중재판정은 당사자 자치의 위반을 이유로 취소 또는 집행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⁴⁾ 특히 법제가 서로 다른 각국의 법원에 의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서는 이와 같은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의 무효나 취소를 다투는 경우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의 국제적인 승인과 집행 또는 외국의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과 집행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서나 신속절차에서의 당사자 보호 및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의 법적 효력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신속절차와 중재판정의 연관성과 관련 법률적 문제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신속절차를 통한 신속중재의 중요성과 이에 관한 외국의 중재규칙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국제상사중재에서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의 유효한 승인과 집행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법률적 문제를 검토한다. 이 가운데 특히 여기서는 국제중재의 신속절차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당사자 합의의 문제와 절차상 제한에 관한 부가요건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그 해결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II. 신속한 중재판정을 위한 신속절차

1.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

중재는 전통적 분쟁해결 방식인 소송과 비교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주요 국제중재기관에서 최종 중재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비록 정해진 기한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기대와는 달리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⁵⁾ 이에 따라 신속절차는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을 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중재절차로서 신속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

4) Piotr Wójtowicz, Franco Gevaerd, "International ADR/Part 2," Alternatives to the High Cost of Litigation, July/August 2019, p.100.

5) Dina D. Prokić, "Mitigating Arbitration's Flaws? The 2017 ICC Expedited Procedure Rules,"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8, p.47.

한 수단이 되었다. 신속절차에 의한 신속중재는 기존의 중재와 다른 별개의 분쟁해결 방법이 아니라 단지 신속성이 더욱 가속화된 또 다른 형태의 중재이다. 따라서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은 일반 중재절차에 의한 중재판정과 다르지 않으며 일반적인 중재판정과 같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도 마찬가지로 중재판정의 집행 가능성이 보장되는 큰 장점이 있으며 국제적인 집행 역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에 의하여 가능해진다.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이 보장되고 궁극적으로 신속중재가 확보된다면 어떠한 중재규칙 형식 아래에서도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속중재는 명시적인 신속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중재절차에서만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중재규칙에 신속절차 조항이 직접적으로 없더라도 사건의 성질과 내용, 당사자와 중재기관의 협력과 의지에 따라서 중재절차가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신속중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실제로 신속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중재규칙도 없이 신속중재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포물러 원(Formula One) 사건'과 '팬핸들(Panhandle)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들은 ICC 중재규칙이 지난 2017년 개정되기 전에 명시적인 신속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중재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⁶⁾

포물러 원 사건은 국제자동차연맹과 시합에 참여하는 팀 사이에 자동차 컬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다.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 신청인은 ICC 중재를 신청하였고 연말에도 불구하고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신속히 구성되었다. 당사자는 7일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고 중재판정부는 심리 48시간 이내에 중재판정서 초안을 ICC 중재법원에 제출하였다.⁷⁾ 이에 따라 당사자가 최종 중재판정을 통보받는 일련의 중재절차가 약 한 달 이내에 모두 이루어지면서 중재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었다. 또 다른 팬핸들 사건은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장기 가스공급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 후 2개월 이내에 ICC 중재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사건이다.⁸⁾ 당사자가 이후 1주일의 기간연장에 별도 합의하였지만 최종적인 중재판정은 중재신청 후 9주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하여 신속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ICC 중재규칙에 없어도 효율적으로 신속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⁹⁾ 그러나 두

6) Javier Tarjuelo, "Fast Track Procedures: A New Trend in Institutional Arbitration," *Dispute Resolution International*, Vol 11 No 2, October, 2017, p.106.

7) ICC Case No. 1021; Nigel Blackaby, Constantine Partasides, et al,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6th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15, p.363.

8) Gaillard and Sauvage (eds), *Fouchard Gaillard Goldma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1248.

9) Irene Welser and Christian Klausegger, "Fast Track Arbitration: Just Fast or Something Different?" *Austrian Arbitration Yearbook* 2009, 2009, pp.259-279.

사건은 모두 과거의 ICC 중재규칙 제38조(2017.3.1. 이후 현재의 제39조)가 당사자의 동의와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라 중재의 일반절차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규정하였고 또한 당사자와 중재인이 신속한 분쟁해결에 완전히 동의하고 협조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¹⁰⁾ 만일 당사자 또는 중재판정부 누구라도 신속한 중재절차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서로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신속한 중재절차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중재의 신속한 절차를 위해서는 모든 중재 참가자의 의지와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¹¹⁾ 이는 비록 명시적인 신속절차 규정이 마련된 이후에도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속절차가 보장될 수 있는 환경과 협력이 언제나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신속절차를 위한 협력에 비우호적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중재합의 시 미래의 복잡한 분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분쟁이 발생한 후 가능한 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 때로는 특정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¹²⁾ 따라서 신속한 중재절차를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의 불확실한 의지와 협력에만 의존시키고 이를 유지한다는 것은 신속하고 유효한 중재판정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중재규칙에 신속절차 규정을 두지 않으면 신속절차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신속중재에 동의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신속절차의 요건과 범위 등에 관한 명시적인 신속절차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신속한 절차가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적어도 신속중재를 달성하고 유효한 중재판정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 신속절차에 관한 국제중재규칙

신속절차에 의한 신속중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과 당사자의 협력만 기다리고 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 주요 중재기관은 중재의 신속절차에 관한 특별한 중재규칙을 두고 있다. 국제상거래의 분쟁해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ICC는 이미 2017년 3월 1일부터 ICC 중재규칙(ICC Rules of Arbitration) 제30조 신속절차와 부록 VI의 신속절차규칙(E Expedited Procedure Rules)에서 새로운 '신속절차 조항'을 마련하였고¹³⁾ UNCITRAL은 현재 명시적인 신속절차 조항을 두기 위한 중재규칙의 개정을 마무

10) Javier Tarjuelo, *id.*, p.107.

11) Dina D. Prokić, *id.*, p.50.

12) Lucja Nowak and Nata Ghibradze, "The ICC Expedited Procedure Rules - Strengthening the Court's Powers," Kluwer Arbitration Blog, December 13, 2016.

13) ICC, "ICC Arbitration Rules in force as from 1 March 2017 and Mediation Rules in force as from 1 January

리하는 중이다.¹⁴⁾ 이외에 영역별로 스포츠 관련 중재, 지적재산권 관련 중재, 투자 관련 중재의 경우에서도 신속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¹⁵⁾ 또한, 개별국가의 대부분 국제중재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중재규칙에 신속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중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한편 국제중재기관의 신속절차에 대한 규범적 접근방법은 신속중재를 위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신속절차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중재절차 자체의 효율성과 절차의 단축 가능성을 내포한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신속중재를 간접적으로 구현하는 경우,¹⁶⁾ 둘째,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신속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반중재와 신속중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¹⁷⁾ 셋째, 일반 중재규칙과 별개로 신속절차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중재규칙을 두고 신속중재를 운영하는 경우 등이 있다.¹⁸⁾

우리나라 경우에는 신속중재를 위하여 중재규칙에 신속절차 규정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신속절차를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로 구분하여 국내중재의 경우는 '국내중재규칙' 제6장의 제45조 내지 제51조의 신속절차 규정에 따르고 국제중재의 경우는 '국제중재규칙' 제6장의 제43조 내지 제49조의 신속절차 규정에 따라 각각 해결한다.¹⁹⁾

2014," <<https://iccwbo.org/dispute-resolution-services/arbitration/rules-of-arbitration/>>.

14) UNCITRAL의 신속절차에 관한 상세한 제정 경과와 내용에 관해서는 김병태, 전제논문, 280면 참조.

15) 주로 스포츠 관련 분쟁은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와 '스포츠중재법원'(CAS)이 '스포츠 관련 중재규범'(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에 따라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 및 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가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 통일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관련 분쟁은 'ICSID협약 중재규칙'(ICSID Convention Arbitration Rules) 및 '추가규칙'(Additional Facility Rules)에 따라서 각각 신속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16) 런던국제중재법원(LCIA)과 UNCITRAL의 중재규칙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UNCITRAL은 신속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중재규칙의 개정이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현재 LCIA가 신속절차 규정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유일한 중재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LCIA 중재규칙 제9조 (A)는 중재법원의 신속한 구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두고 있으므로 비록 신속절차 규정은 없지만 효율적이고 신속한 중재를 위하여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의한 중재절차의 단축을 허용한다(Rudolf Fiebinger and Christian Gregorich, "Arbitration on Acid," Austrian Arbitration Yearbook 2008, 2008, pp.237-254).

17) 신속절차에 의한 신속중재를 도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서 ICC 국제중재법원, 스위스상공회의소 중재기관(SCAI),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및 중국국제상공회의소 중재기관, 비엔나국제중재센터(V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CAC),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그루지아국제중재센터(GIAC), 독일중재기관(DIS), 러시아현대중재기관 산하 러시아중재센터, 라고스상공회의소 국제중재센터(LACIAC) 등의 중재규칙이 여기에 속한다.

18)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ACICA) 신속중재규칙(2016), 아시아국제중재센터(AIAC) 신속중재규칙(2018), 스톡홀름상공회의소(SCC) 신속중재규칙(2017),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국제신속절차(2014)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19) 특히, 우리나라와 외국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는 박범철, 주이화, 심상렬, "신속절차에 관한 아시아 4개국의 국제중재규칙 비교 연구,"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2013), 193면 [표1] 참조.

III. 신속절차의 중재판정과 주요 법적 문제

1. 신속절차의 자동적용에 관한 문제

가. 신속절차의 선택적용과 자동적용

국제사회에서 중재기관이 신속절차를 구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중재규칙에 명시적인 신속절차 규정을 두어 확실한 신속중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서는 신속절차에 관한 규정을 중재규칙에 명시적으로 두더라도 신속절차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의 유효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신속절차 규정이 당사자간의 합의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당사자 자치, 방어권 보호, 적법절차 등을 이유로 신속절차에 따른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뉴욕협약에 의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부 역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중재기관의 신속절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크게 (i) 신속절차를 자동적용하는 경우와 (ii) 신속절차를 당사자가 선택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²⁰⁾ 신속절차를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절차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적용을 배제하거나 모두 당사자의 중재에 관한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합의대로 중재절차가 진행된다면 신속절차의 적용 여부를 다투어 중재판정의 효력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 아래에 신속절차를 자동적용하는 경우 그 절차가 당사자 합의와 일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신속절차의 적용과 절차적 제한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그에 따른 중재판정의 효력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서 정면으로 도전받게 된다.

신속중재를 위하여 신속절차의 자동적용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는 ICC 중재규칙이다. ICC 중재규칙은 분쟁금액이 미화 2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속절차 규정을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¹⁾ 다만, 이는 당사자가 중재계약에서 또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도 신속절차 규정을 거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당사자의 요청 또는 ICC 중재법원이 신속절차의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절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ICDR 국제중재규칙은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달리 중재기관이 결정하지 않는 한 미화 25만 달러 이하의 청구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신속절차를 적용하며 당

20) Rudolf Fiebinger and Christian Gregorich, *id.*, pp.238-241. 신속절차의 적용범위와 자동적용 및 선택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국제중재규칙의 사례에 대해서는 김병태, 전제논문, 286면 이하 참조.

21) ICC 중재규칙(2017) 제30조 (2)(a).

사자는 기타의 경우에도 신속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²²⁾

반면에 HKIAC 중재규칙은 과거에 분쟁금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속절차의 자동적용을 규정하였지만, 지난 2013년에 중재규칙을 개정하여 신속절차의 자동적용 대신에 선택적용을 허용하였다. 또한 HKIAC 중재규칙은 동시에 분쟁금액 기준값을 미화 25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이상(2,500백만 홍콩달러)으로 개정하였다.²³⁾ SIAC 및 SCC 중재기관도 신속절차의 선택적 적용을 중재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다. SIAC 중재규칙은 HKIAC 중재규칙과 매우 유사하게 중재판정부 구성에 앞서 (i) 분쟁금액이 6백만 싱가포르 달러(미화 4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ii) 당사자가 동의하고, (iii) 예외적인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신속절차 신청을 허용한다.²⁴⁾ 그러나 SCC에서의 신속중재는 분쟁금액이나 기타의 상황과 관계없이 양 당사자가 그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 신속절차 규정이 적용된다. SCC 중재규칙에서는 HKIAC와 SIAC와는 달리 당사자의 합의가 항상 필요하다.

나. 신속절차의 자동적용에 관한 법적 고려사항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중재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며 중재에 관한 합의는 중재규칙과 중재절차에 관한 합의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중재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상세한 중재절차에 관한 합의를 따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적용될 중재규칙에 합의하면서 해당 중재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재규칙의 유형에 따라서 신속절차 규정의 적용을 당사자가 선택하거나 합의한 중재규칙이 신속절차의 자동적용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사자가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당사자 자치에 따라 상호 합의대로 중재가 진행될 수 있다. 문제는 특히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규칙에 따라서 신속절차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었으나 이러한 신속절차의 적용이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반하거나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중재기관의 신속절차에 관한 자동적용 규정 때문에 당사자가 신속절차를 합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신속절차가 소급 적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²⁵⁾ 이러한 경우는 비록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이라도 당사자 합의에 반하기 때문에 그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고 또한 승인과 집행에서 거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에서는 당사자 합의의 내용과 중재규칙에서 요구되는 신속절차의 자동적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함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신속절차의 자동적용 방식을 택하고 있는 ICC 중재규칙의 경우 신속절차는 (i) 중재

22) ICDR 국제신속절차(2014) 제1조 (4).

23) HKIAC 관리중재규칙(2018) 제42조.

24) SIAC 중재규칙(2016) 제5조 (1).

25) 김병태, 전게논문, 288면.

계약이 2017년 3월 1일 이후 미화 2백만 달러 미만의 분쟁금액이고 (ii) 당사자의 합의가 신속 절차를 배제하지 않으며 (iii) ICC가 신속절차의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해당 중재사건에 신속절차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ICC 신속절차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 되면 3인의 중재인 합의와 같은 당사자의 자치적인 합의는 효력이 없고 신속절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신속절차가 자동적용된 결과 당사자간의 중재에 관한 합의가 보호될 수 없거나 신속절차에서 당사자의 방어가 보장될 수 없게 되면 중재판정 자체의 법적 효력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중재에서도 신속절차가 자동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은 (i) 신청금액이나 반대신청금액이 5억 원²⁶⁾ 이하인 경우와 (ii) 신속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²⁷⁾ 그리고 (iii) 신청금액이나 반대신청금액의 증액으로 5억 원을 초과하여 당사자 합의와 중재판정부 승인이 있는 경우²⁸⁾에는 신속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ii)와 (iii)의 경우는 신속절차의 적용을 위하여 당사자 합의를 요구하는 선택적 적용이 허용되지만, (i)의 경우는 5억 원의 기준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신속절차가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중재규칙에서도 (i)의 경우처럼 신속절차가 자동적용되는 경우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 합의가 존재한다면 신속절차에 따른 중재판정의 효력은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일반적으로 중재규칙이 신속절차의 자동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반드시 자동적용 상황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LCIA 중재규칙은 거의 유일하게 신속절차 규정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중재판정부의 신속한 구성을 위한 특별규정에 따라 예외적인 긴급의 경우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신속한 구성을 LCIA 중재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⁹⁾ 이는 LCIA 중재법원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중재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⁰⁾ 일단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일반 중재규칙이 적용되지만, 당사자의 의사와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라 신속절차에 준하는 중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역시 명시적 및 자동적 신속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서도 제한적이지만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고려한다면 명시적인 신속절차 규정하에서 신속절차의 선택적 적용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당사자 자치가 보호될 수 있는 반면에, 신속절차의 자동

26) 5억원 신청금액 기준의 적정성에 관하여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김병태, 전제논문, 287면 및 김도훈, “국제중재에서의 신속절차에 관한 고찰 - 대한상사중재원의 개정 국제중재규칙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2012), 699면.

27)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43조 제1호 및 제2호.

28)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44조 제2항.

29) LCIA 중재규칙 제9조 (A).

30) Javier Tarjuelo, *id.*, p.113.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당사자 자치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절차의 중재판정에 대한 법률적 다툼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중재가 신속절차의 자동적용에 의하는 경우 당사자 자치에 반한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중재판정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된 실제 사례는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당사자 합의와 신속절차의 규정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또는 신속절차상의 기간 단축과 같은 부가요건으로 인하여 당사자 합의 또는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 등에서 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사례와 관련 국제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상세한 법률적 문제는 항목을 달리하여 각각 살펴본다.

2. 신속절차의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문제

가. 신속절차의 중재판정부 구성과 당사자 합의

중재규칙의 신속절차에서는 중재절차의 단순성과 신속성을 위해 1인의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신속절차에서 요구되는 단독 중재인과는 다른 내용으로 중재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예컨대, 당사자가 3인의 중재인과 같이 별도의 중재인 수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면 단독 중재인을 요구하는 중재규칙과 충돌되는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처럼 당사자간의 중재인 수에 관한 중재합의가 단독 중재인을 요구하는 신속절차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하여 국제중재기관은 다양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중재합의와 신속절차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신속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JCAA 상사중재규칙은 당사자가 1인 이상의 중재판정부를 합의한 경우는 신속절차의 적용이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한다.³¹⁾ 둘째, 중간적인 입장에서 당사자가 복수의 중재인 합의를 한 경우 예외적인 신속절차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HKIAC 중재규칙과 VIAC 중재규칙은 신속절차 규정이 강제적 규범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신속절차에 따라 단독 중재인을 선택하는 경우에 단독 중재인을 선정한다.³²⁾ 예컨대, HKIAC 중재규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중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신속절차 조항을 두고 당사자가 중재계약에서 3인의 중재인을 합의한 경우 우선 당사자에게 단독 중재인을 권유하고 만일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3인의 중재인에게 회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당사자의 합의를 배제하고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ICC 중재규칙과 SIAC 중재규칙은 당사자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절차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 중재인을 선정한다.³³⁾ 예컨대, ICC 중재규칙의 경우

31) 예컨대, JCAA 상사중재규칙(2015) 제6장 제75조 제2항 (2).

32) 예컨대, HKIAC 중재규칙(2018) 제41조 (2)(b), VIAC 중재규칙(2018) 및 스위스 중재규칙 제42조 (2)(b)-(c).

33) 예컨대, ICC 중재규칙(2017) 부록 VI, 제2조 (1), ICC 중재진행에 관한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 지침 제109조 및 제110조(2019년 1월) 및 SIAC 규칙 제5조 (2)(b).

ICC 신속절차 규정 제2조 (1)은 “중재법원은 중재계약의 반대 조항에도 불구하고, 단독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ICC 신속절차 규정의 자동적용 요건이 일단 충족되면 3인의 중재인에 관한 당사자의 계약상 합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⁴⁾ 마찬가지로, ICDR 중재규칙 E-6은 ICDR의 중재인 선정절차에 따라 단독 중재인을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SIAC 중재규칙 제5조 (2)(b)는 SIAC 중재법원장(President)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단독 중재인에게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국제중재규칙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ICC 신속절차 규정 제2조, ICDR 중재규칙 E-6 및 SIAC 중재규칙 제5조와 같은 세 번째 유형이지만, 이와 같은 신속절차 규정에서는 한편으로 계약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항상 제기된다.³⁵⁾ 특히 이러한 국제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3인의 중재인이 무시된 채 신속절차 규정에 따른 단독 중재인이 중재절차를 진행하므로 이에 따른 중재판정이 법적으로 유효할지 그리고 개별국가의 법원은 이러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UNCITRAL 모델중재법은 당사자의 합의가 모델중재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면 그 중재판정은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⁶⁾ 이와 유사하게 뉴욕협약 역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⁷⁾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국가가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승계하고 또한 뉴욕협약의 체약국이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중재법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는 일반적으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중재판정의 집행 역시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속절차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 당사자간의 중재에 관한 합의에 반하는 신속절차 규정의 적법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자치의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중재 실무에서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특히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하는지 아니면 신속절차 규정이 우선하는지는 항상 잠재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SIAC 중재규칙의 신속절차 규정이 적용된 ‘AQZ v. ARA 사건’³⁸⁾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중재인 수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와 신속절차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신속절차 규정을 우선하여 SIAC 중재판정의 집행을 인정된 대표적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와 유사한 내용의

34) Javier Tarjuelo, *id.*, p.111.

35) Lucja Nowak and Nata Ghibradze, *id.*; 안건영, “2017 ICC 개정 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무역연구』, 제13권 제4호(2017.8), 362면.

36) UNCITRAL 모델중재법 제34조 (2)(a)(iv).

37) 뉴욕협약 제5조 (1)(d)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피원용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8) AQZ v. ARA, [2015] SGHC 49 (February 13, 2015).

‘Noble Resources Int’l v. Shanghai Good Credit Int’l 사건’³⁹⁾에서는 중국의 법원이 반대로 당사자 자치를 우선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두 사건을 모두 유의하여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신속절차 규정을 우선한 사례: AQZ v. ARA (2015)

(1) 사건의 개요⁴⁰⁾

싱가포르의 회사(매도인)와 인도 무역해운기업의 싱가포르 자회사(매수인)는 2009년 12월 최초 50,000미터톤의 석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는 동일한 석탄 수량에 관한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매수인은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도인이 이후에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매도인은 두 번째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당사자는 3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SIAC 중재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SIAC 중재법원장은 매수인의 중재신청 사건에 대하여 SIAC 중재규칙의 신속절차 규정에 따라 단독 중재인을 선임하였다. SIAC 중재법원장이 선임한 단독 중재인은 2014년 5월 12일 매도인의 계약위반 책임을 인정하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과 집행에서 UNCITRAL 모델중재법 제34조 (2)(a)(iv)를 근거로 신속절차에 의한 단독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었다. 매도인의 주장에 대하여 싱가포르 고등법원(Singapore High Court)은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신속절차 규정을 따른 중재판정은 달리 배척될 이유가 없다고 2015년 2월 13일 판시하였다.

(2)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판단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가능성에 관한 이 사건에서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SIAC 중재규칙의 적용과 단독 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의 배제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명확히 확인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당사자의 계약에서 SIAC 중재규칙의 적용을 합의한 것은 단독 중재인을 규정하는 SIAC 중재규칙을 우선 적용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단독 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반하지 않고 이와 같은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한다.⁴¹⁾

39) Noble Resources Int’l Pte. Ltd v. Shanghai Good Credit Int’l Trade Co., Ltd. (2016).

40) AQZ v. ARA [2015] SGHC 49, <[https://www.singaporelawwatch.sg/Portals/0/Docs/Judgments/\[2015\]%20SGHC%2049.pdf](https://www.singaporelawwatch.sg/Portals/0/Docs/Judgments/[2015]%20SGHC%2049.pdf)>.

첫째, 당사자가 SIAC 중재규칙의 적용을 계약에서 합의하였으므로 중재규칙은 계약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전체가 합목적적으로(purposively) 해석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중재합의를 이처럼 해석한다면 신속절차 규정에 따라 SIAC 중재법원장이 단독 중재인을 선임할 재량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는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일 이처럼 해석하지 않는다면 SIAC 중재규칙에 따른 신속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가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단독 중재인은 전혀 선정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둘째, 매도인은 비록 중재절차가 중재합의에 반하여 단독 중재인으로 진행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매도인이 계약위반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매도인은 신속절차라는 중재절차의 결과로서 자신이 어떠한 차별을 받았는지를 증명하지도 못하였다. 차별(prejudice)은 UNCITRAL 모델중재법 제34조 (a)(iv)에서 비록 중재판정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관할법원이 문제의 계약위반이 심각하였는지 그리고 계약위반에 대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상황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핵심적으로 당사자가 SIAC 중재규칙에 의한 분쟁해결에 합의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여 이는 SIAC 중재법원장이 사건을 단독 중재인에게 회부할 권한에 당사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신속절차에 의한 단독 중재인의 중재판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사자 합의를 우선한 사례: Noble Resources Int'l Pte. Ltd v. Shanghai Good Credit Int'l Trade Co., Ltd. (2016)

(1) 사건의 개요⁴²⁾

2014년 10월 29일 외국 회사(매도인)와 중국 회사(매수인) 사이에 철광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동 계약은 'GlobalORE 철광석거래 표준계약(GlobalORE SIOTA)을 본 계약에 편입하였고 SIAC 중재규칙의 적용과 3인의 중재판정부 구성을 규정하였다.⁴³⁾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자 매도인은 2015년 1월 14일 SIAC에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면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였다. SIAC 중재법원장은 사건이 접수되자 신속절차의 적용에 관한

41) Javier Tarjuelo, *id.*, p.112; AQZ v. ARA, [2015] SGHC 49 (February 13, 2015).

42) Liu J., Tang M. and Zhu Y., "Chinese Court Refuse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SIAC Award", August 25, 2017,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412f18a5-f910-4fbc-8055-eb421d1de522>>.

43) 당사자의 철광석 매매계약 제2편 제16조(SIOTA의 분쟁)는 "거래 또는 계약으로 인한 분쟁 또는 청구, 존제, 타당성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SIAC 중재규칙에 따라 싱가포르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이 조항에 따라서 중재규칙이 계약에 통합된 것으로 간주한다 ...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의견제출을 매수인에게 요청하였다. 매수인은 2월 6일 신속절차에 반대하고 당사자계약에 따라 3인의 중재인 선임을 SIAC에 요청하였다. 2월 27일 매수인은 다시 SIAC에 신속절차의 반대와 3인의 중재인 구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당사자들이 단독 중재인 선임에 합의하지 못하자 SIAC 중재법원장은 3월 3일 SIAC 중재규칙 제7조 (2)에 따라 단독 중재인을 선임할 것이라고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 같은 날 매도인은 매수인이 3인 중재인의 비용을 모두 부담할 것을 약속한다면 3인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절차에 동의할 것이라고 매수인에게 통보하였다. 3월 5일 매도인은 SIAC에 매수인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조건부 제안이 무효가 되었다고 통보하며 SIAC 중재규칙의 신속절차에 따른 중재절차를 요청하였다. SIAC는 4월 20일 이 사건에 대한 단독 중재인을 결국 선임하였지만, 매수인은 중재절차에 불참하였다. 마침내 8월 26일 단독 중재인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와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후 매도인은 중국 상하이 제1중급 인민법원에 SIAC에 의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재판부는 싱가포르에서 단독 중재인이 내린 SIAC 중재판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2) 중국 인민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한 가장 큰 쟁점은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있었다. 중국 인민법원은 단독 판정부의 구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뉴욕협약의 제5조 (1)(d)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뉴욕협약 제5조 (1)(d)는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인민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IAC 중재규칙의 신속절차 규정은 단독 중재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3인의 중재인과 같은 다른 형태의 중재판정부 구성 역시 배제하지 않는다. 당사자 자치의 원칙은 중재의 기본이며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이미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신속절차에서도 이러한 중재판정부 구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였다.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은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매수인은 명시적으로 단독 중재인의 선임을 반대한다고 통보하였다. 중재에서 신속절차의 적용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기본적인 절차상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되지만 단독 중재인을 임명하는 SIAC의 결정은 중재합의를 위반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재판정은 뉴욕협약 제5조 (1)(d)에 해당하여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⁴⁴⁾

44) Baker McKenzie, “Shanghai Court Refuses Enforcement of SIAC Award Made under 2013 SIAC Expedited Procedure,” Dispute Resolution Client Alert, September 18, 2017, p.2.

이 사건은 비록 상하이 제1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이지만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중국 사법절차에 따라 절차상 상하이 고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에서 실제 동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⁴⁵⁾ 따라서 이러한 판결 내용은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의 판단으로 간주되어 후속적인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국 관련 중재사건에서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법적 고려사항

AQZ v. ARA 사례는 SIAC 중재규칙의 신속절차를 다투는 첫 번째 사건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⁴⁶⁾ 이 사건에서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당사자의 중재규칙 선택에 따라 SIAC 중재법원장이 신속절차에서 선임될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부여받은 재량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중재법원장의 재량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다는 전제에서 사건의 계약일자와 금액 및 복잡성 등을 모두 고려하면 당사자의 계약에서 합의된 것과 다른 수의 중재인을 임명한 것은 신속한 중재판정을 다룰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⁴⁷⁾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판결은 사법적 위반 또는 기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SIAC 중재규칙의 신속절차가 적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룰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⁴⁸⁾

AQZ v. ARA 사건에서는 중재판정부와 집행법원 모두가 당사자 자치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을 특히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 기관은 당사자가 중재에 관한 SIAC 중재규칙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신속절차를 포함한 SIAC 중재규칙의 전체를 수락한 것이며 중재규칙은 SIAC 중재법원장과 사무국에게 중재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본다면 중재법원장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SIAC 중재규칙을 선택한 것은 바로 당사자들이므로 당사자 자치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와 중재규칙의 신속절차 규정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은 중재규칙이 우선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그 이유가 당사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결국 당사자 자치를 보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사자의 계약에 반하는 경우에도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이 준수되었다면 중재판정의 집행은 인정

45) Liu J., Tang M. and Zhu Y., id.

46) 싱가포르에는 AQZ v. ARA 사건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W Company v. Dutch Company and Dutch Holding Company' [2012] 1 SAA 97 사건도 있었으나 이는 신속절차가 중재규칙에 편입되기 전의 사례이므로 신속절차가 중재규칙에 명시적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AQZ v. ARA 사건이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47) Kateryna Honcharenko, "Case Note: AQZ v. ARA [2015] SHGC 49," The Resolver: the Quarterly Magazine of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Volume 2019 Issue 3, 2019 p.16.

48) Gary B. Born and Jonathan W. Lim, "AQZ v. ARA: Singapore High Court Upholds Award Made under SIAC Expedited Procedure," Kluwer Arbitration Blog, March 9, 2015, p.4.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중재규칙 예컨대, ICC 신속절차 규정에서 단독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에 대하여도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⁹⁾ 다만, SIAC와 같은 중재 기관에서 재량적 권한에 의하여 단독 중재인을 선임하는 것이 비록 정상적인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임명권한에서 보면 그러한 재량은 권한을 초과하였고 단독 중재인의 선임 시 실제로는 권한 없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일부 비판적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⁵⁰⁾

실제로 이 사건은 기관중재를 이용할 때 당사자의 자치와 중재기관의 통제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할권에 따라서는 동일 문제에 대하여 다른 입장과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의 효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비교검토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의 사례이다. 중국의 Noble Resources Int'l v. Shanghai Good Credit Int'l 사건은 AQZ v. ARA 사건과 비교하여 사건의 내용은 아주 유사하지만, 완전히 반대의 접근으로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중국의 법원은 당사자 자치를 보다 중요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에서 중재규칙은 당사자의 중재계약에서 정한 당사자 자치의 내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는 반면에, 싱가포르와 같은 다른 나라의 법원은 이와 대조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⁵¹⁾ 그러나 어느 사건에서나 모두 당사자 자치의 우선적 보호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며 당사자의 구체적인 합의는 일반적인 중재규칙에 우선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은 다른 사례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⁵²⁾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실제로 우리의 신속절차 규정과 관련된 중재판정부의 구성을 직접적인 이유로 하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사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⁵³⁾

49) 신속절차에 관한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중재절차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에 도달한 사례가 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국제코트협회(ICA) 중재판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ICA 중재인리스트에서 중재인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자신의 중재인을 임명할 권리가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라고 확인하면서 피신청인이 중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한 절차적 방식에 명백히 동의하였다고 보아 중재판정의 집행을 인정하였다(Germany No. 132, Buyer v. Seller, Oberlandesgericht [Court of Appeal], Frankfurt, 26 SchH 03/09, October 12, 2009). 또한, 미국중재협회(AAA) 중재규칙에 따른 스페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중재합의에 위반하여 1인의 중재인만 있었기 때문에 절차와 그에 따른 중재판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중재인이 당사자가 선택한 AAA 중재규칙에 따라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인정하였다(Spain No. 42, Fashion Ribbon Company, Inc. (US) v. Iberband, S.L. (Spain), Tribunal Supremo [Supreme Court], 1943/2001, October 14, 2003).

50) UNCITRAL Working Group II, *id.*, para. 50.

51) Liu J., Tang M. and Zhu Y., *id.*

52)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d ed.), Wolters Kluwer, 2014, p.1392; Margaret L. Moses,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2d ed.), Cambridge U. Press, 2012, p.6.

53) 다만, 외국중재규칙에 의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우리나라에서 구한 사건에서, 당사자는 런던해양중재인협회(LMAA)의 중재규칙과 3인의 중재판정부를 합의하였으나 2인의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분쟁 문제에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가 단지 2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08.3.7. 선고, 2006가합97721 판결; U.N. Comm'n on Int'l Trade Law, Case Law on UNCITRAL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한 신속절차에 따른 중재판정은 물론이고 신속절차에 의한 외국중재판정의 국내 집행에서도 역시 같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국제중재에 관한 우리나라의 신속절차 규정은 사무국이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만일 당사자가 중재계약에서 3인의 중재판정부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사무국이 단독 판정부에 의할 것을 합의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제중재규칙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만일 당사자가 중재계약에서 3인의 중재인을 합의하였더라도 사무국의 권유에 따라 이후 단독 중재인을 별도로 합의한다면 큰 문제 없이 단독 중재인에 의한 신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때 기본적으로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는 적어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속절차 및 단독 중재인 선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른 중재판정은 당사자 자치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그 집행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1인의 단독 중재인은 사무국이 국제중재규칙 제45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단지 '권유'할 수 있을 뿐이지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사무국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단독 중재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문제는 3인의 중재인을 합의한 당사자가 사무국의 단독 중재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하여 국제중재규칙은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만일 신속절차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당사자가 단독 중재인이 아닌 3인의 중재인을 고수하는 경우는 상황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만일 사무국이 당사자 합의 없이 국제중재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1인의 단독 중재인을 선정한다면 앞의 AQZ v. ARA 사건과 같이 중재인 선정에 관한 당사자 자치의 위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중재판정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비록 AQZ v. ARA 사건에서는 SIAC 중재규칙이 중재법원장에게 단독 중재인을 선임할 권한을 부여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중재규칙은 당사자의 중재인 수에 관한 합의에 반하여 단독 중재인을 선임할 별도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당사자가 이미 합의한 3인의 중재판정부를 고집한다면 결국 국제중재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일반적인 중재인의 선정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국제중재규칙의 신속절차 적용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독 중재인이 3인의 중재판정부로 변경되는 것일 뿐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신속절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3인의 중재인 합의가 신속절차에서 여전히 유효한 경우 현재의 국제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 자치와 적법절차를 보호하면서도 단독 중재인 선임에 의한 실질적인 신속절차를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독 중재인 합의에 관한 사무국의

Texts (CLOUT), U.N. Doc. A/CN.9/Ser.C/ABSTRACTS/136, September 30, 2013, p.7). 반면에, 다른 LMAA 중재판정 사건에서 중국법원은 당사자의 계약이 3인의 중재판정부를 규정하였으나 중재인중 한 명이 최종 중재판정 전에 사퇴하였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하였다(China No. 6, First Investment Corp. v. Not Indicated, Higher People's Court, Fujian Province, October 12, 2007 and Supreme People's Court, February 27 2008).

권유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 단독 중재인을 사무국에서 최종 선정하는 방식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중재인후보자 추천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신속절차에서 단독 중재인에 대한 당사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독 중재인 합의 권유에도 당사자의 실질적인 협조와 합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⁵⁴⁾ ICDR과 WIPO가 신속절차에서 중재기관의 사무국이 당사자에게 5명 또는 3명의 중재인 후보자목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⁵⁵⁾ 우리의 중재규칙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신속절차의 절차적 부가요건에 관한 문제

가. 신속절차상 절차적 부가요건

신속한 중재절차를 위해서는 단독 중재인의 선임 이외에도 단독 중재인의 신속한 중재업무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상의 부가요건 예컨대, 심리나 판정에 대한 시간제한, 서면심리와 판정 이유에 대한 예외적 조치 등이 함께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재인은 중재절차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부가요건에 의하여 중재의 신속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단독 중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절차상 부가적 요건들이 함께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중재규칙이 의도한 중재절차의 신속성은 커질 수 없으며 때로는 절차적 위반에 따르는 중재판정의 효력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단독 중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신속절차에서 단기의 서면제출 기한과 같은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의 중재업무는 전체적으로 적합성과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이 때문에 신속절차 하에서도 오히려 중재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고⁵⁶⁾ 최종적으로 중재판정의 효력에도 역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신속절차의 절차상 부가요건 가운데 특히 중재판정의 효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면중재 및 중재판정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중심으로 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4) 김병태, 전계논문, 290면.

55) ICDR 중재규칙 E-6 및 WIPO 신속중재규칙 제14조 (b). 이 경우 당사자는 배제할 중재인을 상호 확인하고 나머지 후보의 순위를 지정한 후 사무국으로 10일 또는 7일 이내에 제출하면 사무국이 최종 단독 중재인을 선정한다.

56) 예컨대, ICC 중재규칙(2017) 제2조 (2) 및 부록 III에서 중재판정의 기한을 규정한 이유는 단순히 신속한 중재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재인의 수수료를 고정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나. 서면중재에 관한 법적 고려사항

일반적인 중재절차와 비교하여 신속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서면에 의한 중재가 가능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다. 신속한 중재절차를 위한 절차적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록 중재규칙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요 국제중재규칙들은 공통적으로 중재인이 신속절차 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당사자 심문 없이 서면에 의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면제출의 기간 및 서면 길이와 수의 제한을 허용한다.⁵⁷⁾ 예를 들어 ICC의 신속절차에서는 중재인의 재량에 따라 당사자와 협의 후 서면에 의해서만 중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른 조건이 없다면 중재인은 서면 제출 및 서면 증거의 수, 길이 및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ICDR 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반소가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재인이 구두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중재는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HKIAC 중재규칙 역시 당사자 구두심리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서면에 의한 중재를 요구한다. SIAC 중재규칙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증인을 조사하고 법적 쟁점을 듣기 위해 심문을 개최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는 합의하여 중재를 서면에 의해서만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신속중재를 위한 SCC 중재규칙에서는 심문은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개최하며 중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심문을 개최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중재규칙도 신속절차의 경우 제한적인 구술심리와 소액에 대한 원칙적인 서면심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시간제한을 두고 있다. 국제중재규칙 제46조와 제47조는 심리에 관한 신속절차의 특례를 두고 구술심리를 1회로 제한한다. 만일 신청금액 및 반대신청금액이 각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국제중재규칙 제47조 제2항은 또한 서면제출의 기간과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술심리는 공정한 재판의 초석이므로 서면제출의 원칙에서도 당사자는 달리 구술심리를 합의할 수 있으나(제47조 제1항) 반대로 당사자 중 한 명의 요청으로 구술심리를 생략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반한다고 보아야 한다.⁵⁸⁾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제중재규칙들은 공통으로 서면심리와 허용 가능한 서면제출의 수와 각 제출에 부여된 시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서면제출과 시간제한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신속절차의 제한은 중재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제한 때문에 오히려 당사자간의 평등과 적법한 절차가 침해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중재 신청인은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사건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신속절차가 개시된 후 엄격한 시간제한 때문에 시간상 차별받을 수도 있는 당사자 불평등 문

57) Javier Tarjuelo, *id.*, p.113.

58) Dina D. Prokić, *id.*, p.75.

제가 발생한다.⁵⁹⁾ 이 때문에 피해 당사자는 서면제출 또는 시간제한에 따른 중재절차의 단축과 당사자의 평등권 위반을 근거로 중재판정의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게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재기관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변론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중재절차상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중재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뉴욕협약 제5조 (1)(b)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으며⁶⁰⁾ 또한 UNCITRAL 모델중재법 제34조 (2)(a)(ii)에 따라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신속절차상의 서면제출과 시간제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중재인의 임명이나 중재절차에 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사건에 관한 변론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각국의 법원에서도 실제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위험성이 커진다.

따라서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이 취소되거나 그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일반 중재절차와 마찬가지로 신속절차에서도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방어 또는 반론의 기회가 적절하고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주의와 고려가 필요하다.⁶¹⁾ 만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간이 단축된 신속절차가 적용되거나 당사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속절차상의 중재판정은 AQZ v. ARA 사건에서와 같이 중재판정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재인이 중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는 목표와 신속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적법절차 및 동등한 당사자 대우에 관한 문제제기의 위험성 사이에는 항상 신속절차의 확보와 그 이면의 법적 리스크 제거가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양자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다.⁶²⁾ 신속절차에 관한 각국의 주요 판례들을 보면,⁶³⁾ 중재판정의 집행법원은 일반적으로 중재규칙의 신속절차를 존중하고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중재인의 권한과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도 다행히 신속절차의 적법절차 및 공정성의 요건도 함께 균형을 유지하며 고려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 중재판정에 관한 법적 고려사항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에 대하여 주요 국제중재규칙은 일반적으로 신속한 중재를 위하

59) Gaillard and Sauvage (eds), *id.*, p.1248; 안건영, 전제논문, 371면.

60) Dina D. Prokić, *id.*, p.75.

61) Irene Welser and Christian Klausegger, *id.*, pp.270-271; Piotr Wójtowicz, Franco Gevaerd, *id.*, p.101.

62) UNCITRAL Working Group II, *id.*, para 30.

63) 예컨대, English High Court, Travis Coal Restructured Holding v. Essar Global Fund (2014) EWHC 2510 (Comm), July 24, 2014; Shanghai No. 1 Intermediate People's Court, Noble Resources International Pte. Ltd. v. Shanghai Xi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2016), August 11, 2017; Svea Court of Appeal, Case No. T6238-10, February 24, 2012 등의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신속절차의 목적과 당사자 권리의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 신속절차상 중재판정에 대한 기한을 설정하고 판정이유 기재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판정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는 때로는 신속절차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별국가의 입법상황에 따라서 공공질서 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1) 중재판정의 기한

신속절차 규정은 일반적으로 최종적인 중재판정에 대하여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ICC, HKIAC 및 SIAC 등의 대부분 중재규칙은 중재판정의 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한의 시작일은 사건관리회의의 일자(ICC), 중재기관이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배정한 일자(HKIAC) 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일자 등 국제중재규칙마다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 SCC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판정은 그 기간이 더 단축되어 중재인에게 회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ICDR 중재규칙의 경우에는 심문일 또는 최종 서면제출 기한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중재인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중재절차가 시작된 후 총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절차에 대한 모든 국제중재규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HKIAC 및 SIAC) 또는 ‘중재인의 이의 제기 또는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SCC 및 ICC)에는 기한의 연장을 허용한다.⁶⁴⁾

우리나라의 국제중재규칙 역시 중재판정에 관한 신속절차의 특례가 인정되어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국제중재규칙 제48조 제1항).⁶⁵⁾ 다만, 중재판정부가 요청하거나 사무국이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정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지난 2016년 국제중재규칙이 개정되면서 중재판정 기한은 이전의 3개월에서 외국의 주요 중재규칙과 마찬가지로 6개월로 변경되었다.⁶⁶⁾ 다만, 국제중재규칙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판정기한의 연장에 필요한 사유가 무엇이고 또한 언제까지 연장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중재판정의 기한에 대한 제한은 앞에서 살펴본 신속절차에서의 서면제출과 시간 제한의 경우처럼 신속절차상의 제한에 따른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신속절차

64) Javier Tarjuelo, *id.*, p.115.

65) 일반적인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최종서면의 제출일과 심리의 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하고(국제중재규칙 제38조 제1항),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의 요청이 이유가 있거나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중재판정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동조 제2항).

66)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 것에 대하여 신속절차라는 전략적인 수치가 필요하고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 처리 평균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 그리고 판정기한은 제한적이지만 연장될 수 있으므로 기존 3개월의 판정기한이 우리나라에서는 신속절차의 상징적인 수치로서 더 적절하게 보인다(김도훈, 앞의 논문, 710면 및 김병태, 전개논문, 291면).

에서의 서면제출에 대한 시간제한은 당사자에 대한 제한이지만, 중재판정에 대한 시간제한은 중재인에 대한 제한이므로 당사자의 권리 보호의 측면보다는 중재인의 신속절차 규정의 준수 여부가 중재판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속절차에서 정한 중재판정의 기한을 위반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뉴욕협약 제5조 (1)(b)에 의하여 실제로 중재판정의 집행이 거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뉴욕협약에서 정한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의 거절 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중재규칙의 임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⁶⁷⁾

(2) 중재판정의 이유

신속절차 규정은 일반적으로 중재판정의 이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약식기재를 허용하며 일부 국제중재규칙에서는 이유기재의 생략까지도 허용한다. 일반적인 중재판정에서 요구되는 상세한 판정이유 또는 근거를 신속절차에서도 똑같이 요구한다면 오히려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는 중재인의 노력에 반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중재판정의 이유기재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개별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중재판정의 집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중재판정의 집행 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판정의 근거를 둔 이유가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는지 또는 판정이유의 생략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신속절차에서 중재판정의 이유기재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중재규칙으로는 SIAC 및 HKIAC의 신속절차 규정으로서 이들은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은 ‘요약형식’으로 중재판정 이유를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ICC 중재규칙의 신속절차 규정은 중재판정의 이유기재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판정이유를 최대한 간결한 방식으로 기재하면 되는 반면에⁶⁸⁾ SCC 중재규칙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최종진술을 하기 전까지 이유가 부기된 중재판정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 권리를 보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일반 중재판정에 대한 예외로서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는 것을 허용한다(국제중재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특례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이라도 당사자 합의 없이 이유의 기재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지만,⁶⁹⁾ 판정이유의 요지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

67)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

68) 안건영, 전제논문, 363면.

69)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당사자간에 이유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는데도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이 경우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하다. 중재판정의 이유에 대하여 그 요지만 기재하도록 예외를 둔 것은 판정기한과 중재인 수 당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처럼 신속중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중재인의 중재판정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여 신속절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⁷⁰⁾

그러나 이와 같은 중재판정의 이유기재와 관련하여 중재판정이 신속절차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의 이유기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뉴욕협약 제5조 (2)(b)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해당 국가의 공공질서(public policy, 우리나라의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해당)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으며 개별국가와 법원의 입장에 따라서 판정이유가 없는 중재판정의 집행 역시 거부될 수도 있다. 중재판정의 이유기재와 관련된 개별국가의 판례를 보면 각국의 법제도에 따라서 중재판정의 집행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판례법에 따르면 "판정이유가 부기된 중재판정을 하지 못한 것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하며 ... 집행이 요청된 국가의 법이 이유가 부기된 중재판정의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⁷¹⁾이므로 판정이유가 없는 것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에 스페인의 경우에는 스페인 중재법 제37조 4a가 중재판정은 항상 판정이유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므로 스페인 법원은 "판정이유에 관한 요건은 스페인 법률제도의 기본 원칙이며 따라서 중재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판시하였다.⁷²⁾ 또한, 오스트리아 대법원 역시 판정이유가 없는 것은 절차적 공공질서의 위반이며 중재판정의 무효를 정당화한다고 판시하였다.⁷³⁾

따라서 특히 중재판정 이유의 기재를 요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판정이유가 부기되지 않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거부될 수 있다는 법적 리스크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때에도 판정이유 기재에 대하여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였다면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중재에서 판정이유 기재가 요구되고(국제중재규칙 제36조 제1항) 신속절차에서도 약식이지만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므로(제48조 제2항) 판정이유 기재 자체가 없는 중재판정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고(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또한 뉴욕협약 제5조 (2)(b)에 의거 공공질서 위반으로 관할법원에서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⁷⁴⁾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중재절차나 신속절차에서 당사자가 달리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한다.

70)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대한상사중재원 2016 국제중재규칙 해설서」, 2018.8, 129면.

71) OLG Schleswig, Docket No 16 SchH 5/99, in 46 RIW 709, March 30, 2000; Irene Welser and Christian Klausegger, *id.*, p.272.

72) Judgment by the High Court of Justice of Galicia, May 2, 2012, [RJ 2012, 6364].

73) Judgment by the Austrian Supreme Court, September 8, 2016, Docket 18 OCg 3/16i; Anne-Karin Grill and Sebastian Lukic, "Austrian Supreme Court Establishes New Standards as Regards the Decisive Underlying Reasoning of Arbitral Awards," Kluwer Arbitration Blog, December 24, 2016.

합의한 바가 있다면(제36조 제1항 단서 및 제48조 제2항 단서) 판정이유의 미기재까지 포함하여 중재판정의 예외적 효력과 그 집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⁷⁵⁾

결국 신속절차에 의하여 중재가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와 중재인은 이러한 중재판정의 이유에 관한 법적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국가의 법원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당사자는 합리적인 판정이유가 포함된 중재판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규칙에서 당사자의 판정이유 명시에 관한 권리를 허용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우리나라 국제중재규칙은 중재판정의 이유기재에 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정식의 판정이유 기재를 요청한다면 비록 판정이유를 요청할 권리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IV. 결 론

신속절차에 의한 신속중재는 비용 효율적이고 신속한 중재절차에 대한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속중재는 단지 중재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절차적 수단을 갖추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신속절차에 따른 유효한 중재판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제상거래를 고려한다면 신속절차에 의한 외국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국제중재기관이 신속절차를 구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중재규칙에 명시적인 신속절차 규정을 두어 확실하게 신속중재를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중재규칙에 신속절차 규정을 두더라도 신속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의 신속한 절차를 위한 모든 중재 참가자의 의지와 상호 긴밀한 협력이다.

신속절차에 관한 대부분의 국제중재규칙에서 중재판정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속절차 규정이 당사자의 중재합의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신속절차가 오히려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규칙에 따라서 신속절차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었으나 신속절차의 적용이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반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발생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고려한다면 신속절차의 선택적 적용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당사자 자치가 보호될 수 있는 반면에, 신속절차의 자동적용은 상황에 따라 당사자 자치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절차의 중재판정에 대한 법률적 다툼은 더욱 커진다. 이와 관련된 문제와 실제 사례는 주로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당사

74) 이호원, 「중재법연구」, 박영사, 2020.5, 38면.

75)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자 합의와 신속절차의 규정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또는 신속절차상의 기간 단축과 같은 부가요건으로 인하여 당사자 합의 또는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속절차에서는 중재절차의 단순성과 신속성을 위해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가 3인의 중재인과 같이 신속절차 규정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단독 중재인을 요구하는 신속절차와 충돌되는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다. 신속절차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반하는 신속절차 규정의 적법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자치의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항상 문제된다. 중재인 구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하는지 아니면 신속절차 규정이 우선하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AQZ v. ARA 사건'에서는 신속절차 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인정하였으나 반대로 'Noble Resources Int'l v. Shanghai Good Credit Int'l 사건'에서는 당사자 합의를 우선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재판관할권에 따라서는 동일 문제에 대하여 다른 입장과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의 효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어느 사건에서나 모두 당사자 자치의 우선적 보호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므로 당사자의 구체적인 합의는 일반적인 중재규칙에 우선한다는 일반원칙은 어느 경우에서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신속절차에서는 사무국이 단지 단독 중재인을 당사자에게 '권유'할 수 있을 뿐이므로 단독 중재인 합의에 관한 사무국의 권유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 사무국의 단독 중재인 선정방식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중재인후보자 추천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신속절차에서 단독 중재인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신속한 중재절차를 위해서는 단독 중재인의 선임 이외에도 신속한 중재를 위한 절차상의 부가요건 예컨대, 심리에 대한 시간제한 또는 서면심리 등의 예외적 조치 등이 함께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주요 국제중재규칙은 공통으로 서면심리와 허용 가능한 서면제출의 수와 각 제출에 부여된 시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서면제출과 시간제한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신속절차의 제한은 중재의 신속성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제한 때문에 오히려 당사자간의 평등과 적법한 절차가 침해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서면제출에 관한 제한 때문에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이 취소되거나 그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일반 중재절차와 마찬가지로 신속절차에서도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방어 또는 변론의 기회가 적절하고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주의와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에 대하여 주요 국제중재규칙은 일반적으로 신속한 중재를 위하여 신속절차상 중재판정에 대한 기한을 설정하고 판정이유 기재의 특례와 같은 또 다른 절차상 부가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재판정에 대한 제한과 예외 역시 중재판정의 승

인과 집행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신속절차 규정은 일반적으로 중재판정의 이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약식기재를 허용하며 일부 중재규칙에서는 이유기재의 생략까지도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판정의 이유기재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오히려 개별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중재판정의 집행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에서 당사자와 중재인은 중재판정의 이유에 관한 법적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개별국가의 법원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합리적인 판정이유가 포함된 중재판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

(논문접수 : 2021. 3. 7. / 심사개시 : 2021. 4. 3. / 게재확정 : 2021. 5. 3.)

참 고 문 헌

- 김도훈, “국제중재에서의 신속절차에 관한 고찰 - 대한상사중재원의 개정 국제중재규칙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2012)
- 김병태, “신속한 중재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시사점 - UNCITRAL의 신속중재규정(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2020.8)
-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대한상사중재원 2016 국제중재규칙 해설서』, 2018.8
- 박범철, 주이화, 심상렬, “신속절차에 관한 아시아 4개국의 국제중재규칙 비교 연구,”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2013.3)
- 서울중앙지법 2008.3.7. 선고, 2006가합97721 판결
- 안건영, “2017 ICC 개정 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무역연구』, 제13권 제4호(2017.8)
- 이호원, 『중재법연구』, 박영사, 2020.5
- Anne-Karin Grill and Sebastian Lukic, “Austrian Supreme Court Establishes New Standards as Regards the Decisive Underlying Reasoning of Arbitral Awards,” Kluwer Arbitration Blog, December 24, 2016
- AQZ v. ARA [2015] SGHC 49, <[https://www.singaporelawwatch.sg/Portals/0/Docs/Judgments/\[2015\]%20SGHC%2049.pdf](https://www.singaporelawwatch.sg/Portals/0/Docs/Judgments/[2015]%20SGHC%2049.pdf)>
- Baker McKenzie, “Shanghai Court Refuses Enforcement of SIAC Award Made under 2013 SIAC Expedited Procedure,” Dispute Resolution Client Alert, September 18, 2017
- China No. 6, First Investment Corp. v. Not Indicated, Higher People’s Court, Fujian Province (October 12, 2007) and Supreme People’s Court (February 27 2008)
- Dina D. Prokić, “Mitigating Arbitration’s Flaws? The 2017 ICC Expedited Procedure Rules,”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8
- English High Court, Travis Coal Restructured Holding v. Essar Global Fund (2014) EWHC 2510 (Comm) (July 24, 2014)
- Gaillard and Sauvage (eds), Fouchard Gaillard Goldma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d ed.), Wolters Kluwer, 2014
- Gary B. Born and Jonathan W. Lim, “AQZ v ARA: Singapore High Court Upholds

- Award Made under SIAC Expedited Procedure,” Kluwer Arbitration Blog, March 9, 2015
- Germany No. 132, Buyer v. Seller, Oberlandesgericht [Court of Appeal], Frankfurt, 26 SchH 03/09 (October 12, 2009)
- ICC Case No. 1021
- ICC, “ICC Arbitration Rules in force as from 1 March 2017 and Mediation Rules 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4,” <<https://iccwbo.org/dispute-resolution-services/arbitration/rules-of-arbitration/>>
- Irene Welser and Christian Klausegger, “Fast Track Arbitration: Just Fast or Something Different?” Austrian Arbitration Yearbook 2009, 2009
- Javier Tarjuelo, “Fast Track Procedures: A New Trend in Institutional Arbitration,” Dispute Resolution International, Vol 11 No 2, October 2017
- Judgment by the Austrian Supreme Court, September 8, 2016, Docket 18 OCg 3/16i
- Judgment by the High Court of Justice of Galicia, May 2, 2012, [RJ 2012, 6364]
- Kateryna Honcharenko, “Case Note: AQZ v ARA [2015] SHGC 49,” the Resolver: the Quarterly Magazine of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Volume 2019 Issue 3, 2019
- Liu J., Tang M. and Zhu Y., “Chinese Court Refuse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SIAC Award”, August 25, 2017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412f18a5-f910-4fbc-8055-eb421d1de522>>
- Lucja Nowak and Nata Ghibradze, “The ICC Expedited Procedure Rules - Strengthening the Court’s Powers,” Kluwer Arbitration Blog, December 13, 2016
- Margaret L. Moses,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2d ed.), Cambridge U. Press, 2012
- Nigel Blackaby, Constantine Partasides, et al,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6th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15
- Noble Resources Int’l Pte. Ltd v. Shanghai Good Credit Int’l Trade Co., Ltd. (2016).
- OLG Schleswig, Docket No 16 SchH 5/99, in 46 RIW 709 (March 30, 2000)
- Piotr Wójtowicz, Franco Gevaerd, “International ADR/Part 2,” Alternatives to the High Cost of Litigation, July/August 2019
- Rudolf Fiebinger and Christian Gregorich, “Arbitration on Acid,” Austrian Arbitration Yearbook 2008, 2008
- Shanghai No. 1 Intermediate People’s Court, Noble Resources International Pte. Ltd. v.

- Shanghai Xi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2016) (August 11, 2017)
- Spain No. 42, Fashion Ribbon Company, Inc. (US) v. Iberband, S.L. (Spain), Tribunal Supremo [Supreme Court], 1943/2001, (October 14, 2003)
- Svea Court of Appeal, Case No. T6238-10 (February 24, 2012)
- U.N. Comm'n on Int'l Trade Law, Case Law on UNCITRAL Texts (CLOUT), U.N. Doc. A/CN.9/Ser.C/ABSTRACTS/136, September 30, 2013
- UNCITRAL Working Group II,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Issues relating to Expedited Arbitration," A/CN.9/WG.II/WP.207, February 4-8, 2019
- W Company v. Dutch Company and Dutch Holding Company [2012] 1 SAA 97

Abstract

Legal Review on the Effectiveness of Arbitral Award in an Expedited Procedur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im, Byung-Tae

The current formalism in arbitration may significantly hamper arbitral proceedings. For this reason, the concern for quick and effective awards has resulted in expedited procedures, in which arbitral award on disputes between parties can be rendered within a very short time. Most major arbitral institutions have adopted special rules for expedited procedures, which may cause some legal problems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expedited procedure rules provided by the different arbitral institutions, the question is whether provisions impair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For example, an award rendered by a sole arbitrator in disregard of the parties' explicit agreement to have their dispute decided by three arbitrators could be set aside, or its enforcement may be refused, by national courts.

Second, compared to ordinary procedures, the expedited procedure rules involve certain limitations on the scope of the procedure, aimed at saving time and costs for the parties. These rules have in common the limitations on the number of permissible submissions and the time granted for filing each submission. The problem arises when the claimant has ample time to prepare its case in depth before initiating the proceedings, but the defendant is unable to do so as a consequence of the stringent time limits of the expedited procedure. To avoid any problems from such limitations, the utmost care and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ensure that all submissions by one party in the proceedings are presented to the other, and that this party has a proper opportunity to comment thereupon.

Third, the expedited procedure rules usually establish a time limit for rendering the final award. With regard to the award rendered in the expedited procedure, another question is whether it shall state the reasons upon which it is based, in order to avoid any challenge and ensure its enforceability. Parties should keep in mind that some national authorities

may refus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according to the New York Convention if it lacks reasons. Consequently, parties and arbitrators should bear in mind that national courts may require an award to be of sound reasoning to ensure i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Key Words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expedited arbitration, expedited procedur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arbitration rule, sole arbitrator, arbitral award, AQZ v ARA